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3. 17.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9 조(보수)	제3항 [종류A, C, C-E, C-F, S 수익증권]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제3항 [종류A, C, C-E, C-F, S 수익증권]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신탁업자 보수 : 0.05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신탁업자 보수 : 0.03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신탁업자 0.050%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0.720%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와 Rebat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수>** (업데이트) 신탁업자 0.030% ·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72%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재형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3. 17.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9 조(보수)	제3항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제3항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76%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19%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신탁업자 보수 : 0.05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신탁업자 보수 : 0.030%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신탁업자 0.050% (추가)	**<보수>** (업데이트) 신탁업자 0.030% ·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72%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76%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7.19%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3. 17.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9 조(보수)	제3항 [종류A, C, C-E, C-F 수익증권]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제3항 [종류A, C, C-E, C-F 수익증권]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신탁업자 보수 : 0.05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신탁업자 보수 : 0.03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신탁업자 0.050% (추가)	**<보수>** (업데이트) 신탁업자 0.030% ·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72%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3. 17.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삭제>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⑧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삭제>
	⑨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5영업일(17시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⑩제3항 내지 제9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제4항 내지 제9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⑪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현행과 동일) 2. 제4항 내지 제7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⑨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현행과 동일)
제 39 조(보수)	제3항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제3항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0)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6) 수익자가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8)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9)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삭제> <삭제> (6)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

	부터 제 1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1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0)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11)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자[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	부터 제 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0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8)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9)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자[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재간접형]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신탁업자 보수 : 0.05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신탁업자 보수 : 0.03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신탁업자 0.050%	**<보수>** (업데이트) 신탁업자 0.03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2. 전환절차 및 방법**	**2.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략)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 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별첨 1>
[변경 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치주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주식혼합]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 이하, 어음에 40% 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채권]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국공채]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지역,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지역,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 [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 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해외채권과 시니어론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변경 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인 Best 연금자 [주식혼합]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 [채권]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국공채]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주식시장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 [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 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재형 글로벌 스마트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3월 17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0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26%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0.620% 수준입니다	**보수** (업데이트)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62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0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26%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3월 17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표지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67%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84%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표지	투자 위험 등급 : 4등급(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위험 등급 : 5등급(낮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67%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84%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신종MMF(S-26호)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3월 17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2.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 1 항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	제 1 항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 2 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 2 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3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제 3 항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무증권 (채권, 기업어음)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 조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어음의 경우 이 투자신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무증권 (채권, 기업어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환매조건부매매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자산총액의 3%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1%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 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현 행과 동일)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06%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7%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6)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생략)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

		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석 추가)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Call 금리 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 C 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되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06%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7%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신종MMF(S-27호)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3월 17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 1 항 2.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 1 항 2.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관한 사항	(주석 추가)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타투자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 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현 행과 동일)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07%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6%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0.07%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6%임에 따라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3. 17.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58%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6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구의 개요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58%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6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Smart Up Plus포커스포트폴리오 증권투자신탁(제3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03. 17.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1항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50조(공시)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7일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2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7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이하 삭제) (삭제)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2.21%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7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